

대학 자체평가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 번호 | 개정일자 | 개정자 (서명) | 번호 | 개정일자 | 개정자 (서명) |
|----|------------|----------|----|------|----------|
| 1 | 2016.10.28 | | 16 | | |
| 2 | 2017. 3. 1 | | 17 | | |
| 3 | 2019. 1. 7 | | 18 | | |
| 4 | | | 19 | | |
| 5 | | | 20 | | |
| 6 | | | 21 | | |
| 7 | | | 22 | | |
| 8 | | | 23 | | |
| 9 | | | 24 | | |
| 10 | | | 25 | | |
| 11 | | | 26 | | |
| 12 | | | 27 | | |
| 13 | | | 28 | | |
| 14 | | | 29 | | |
| 15 | | | 30 | | |

대학 자체평가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58조의 3에 의거 본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학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자체평가 실시에 따른 절차, 방법,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자체평가”라 함은 본교가 자체적으로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이하 “교육 연구 등”이라 한다)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평가영역”이라 함은 대학자체평가를 위해 평가 지표를 모은 대단위 구분을 말한다.
3. “평가지표”라 함은 각 영역별 세부 평가 단위를 말한다.

제3조 (관련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임무) ① 자체평가를 위하여 ‘기획·연구위원회’, ‘평가·검증위원회’, ‘평가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각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기획·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부(과) 자체평가 대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1. 7>
2. 평가·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임명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평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평가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별도 평가 실무위원회 없이 예산평가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6.10.28., 2019.1.7>

③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연구위원회
 - 가. 기본방향, 전략 수립 및 평가 편람 규정
 - 나. 평가지표 개발 및 지표별 목표값 설정
 - 다. 그 외 수반되는 사항
2. 평가·검증 위원회
 - 가. 자체평가 실시 및 평가지표 관련 기초자료 검증

- 나.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다. 그 외 수반되는 사항
- 3. 평가실무 위원회
 - 가. 평가 지표별 관련 자료 산출 및 전산 입력
 - 나. 평가 지표별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 다. 그 외 수반되는 사항

제4조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① 각 위원회별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평가주기) 대학 자체평가는 매 학년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평가도 실적이 산출되는 매년 9월에서 차년도 1월 사이에 실시한다.<개정 2016.10.28.,2017.3.1>

제6조 (평가기준) 평가기준은 대학 자체평가 기획·연구위원회에서 정한 편람에 의한다.

제7조 (평가절차) 대학자체평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자체평가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는 해당학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연구위원회에 보고한다.
2. 기획·연구위원회 보고 후, 담당부서는 평가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산 상 자료입력 및 근거 제출을 요청한다.
3. 평가·검증위원회에서는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영역별 담당위원(“자체평가관”이라 칭함)을 지정하여 평가 및 분석을 하고 종합 정리한 후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4. 자체평가 최종보고서는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학부(과)로 통보하여 학부(과) 발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은 기획·연구위원회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제9조 (평가대상) ① 본 대학 직제상의 단과대학 및 학부(과)는 자체평가의 평가대상이 된다.

② 통·폐합된 단위기관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단위기관에 통합하여 평가한다.

③ 신설되는 단위기관의 경우에는 편제완성년도의 익년도부터 평가한다.

제10조 (이의신청) ① 각 기관장은 통보된 실적에 대해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확인 가

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② 기획처장은 평가·검증위원회에 이를 심의 요청하며, 그 결과를 반영한다.

제11조 (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 ① 자체평가의 결과는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2년 1회 이상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결과는 본교의 장단기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 대학특성화 정책 반영, 교육 및 행정체제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체평가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기획·연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대학자체평가부터 적용한다.